

삼척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	-----

제출년월일 : 1996. 1.

제출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개정령(대통령령제 14857호 : 1995. 12. 29)이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삼척시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가. 목적 —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액여비 지급
(안 제2조 제1항)

○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전액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경우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둘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안 제2조 제2항)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 지급한도액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안 제2조 제3항)

다. 국내여비규정 준용(안제3조)

○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통규정제21조"는 "통규칙제17조"로 본다.
-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라. 국외여비규정 준용(안제4조)

-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내여비규정(P5~18)
 - 국외여비규정(P19~29)
 - 삼척시여비조례(구)(P30~31)
 - 국내여비규정증개정령(P32~33)
 - 국가공무원법(P34~35)
 - 지방공무원법(P36)
 - 관용차량관리규정(P37~39)
 -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P40~42)
- 표준 준칙안(P43~45)
- 신·구조문 대비표(P46~49)

삼척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삼척시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 척 시 여 비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 ·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
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기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삭 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준용
제3조(여비정책)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책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삭 제) ※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준용
제4조(월액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기 정 안
<p>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①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 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 정액의 전부</p> <p>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p> <p>제6조(현장지도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삭 제)</p> <p>※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준용</p> <p>(삭 제)</p> <p>※ 현지교통비(1일 6,500원) 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 (4시간 이상 10,000원, 4시간 미만 5,000원)지급</p>

현 행	기 정 안
<p>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행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규정을, 외국 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 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 · 제3항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 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 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 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 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 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표 제3 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이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24조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